

## 물적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당사” 또는 “롯데케미칼”)은 2026년 04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당사가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가칭)을 분할신설회사로 하는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본건 물적분할

당사는 2026년 04월 30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당사가 영위하는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 화성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소재 대산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가칭)을 설립하는 거래를 승인하였으며 당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본건 물적분할 이후,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 및 부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법 제 530 조의 9 제 2 항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분할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회사도 분할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본건 물적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적용되고, 기업활력법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라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10 일(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외)로 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채권자들께서는 본건 물적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5월 18일까지
-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롯데케미칼(주) 재무 1팀

만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재무1팀(02-829-43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2026년 04월 30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대표이사 이 영 준

